

# -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 **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2차 모집 공고**

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1일

##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### I 모집 개요

- 신청기간 : 2024. 9. 5.(목) 09:00 ~ 9. 11.(수) 18:00
- 모집인원 : 2,700명 (2차)
-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<https://youth.jobaba.net>) 온라인 신청
- 지원대상

-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\* 경기도 거주자

\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
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 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 보험 가입자

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
▶ 공공기관 범위 : 정부 공공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등

▶ 관련 규정(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)

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공기관)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

·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대상 등)

- 건강보험료 3개월(24년 6 ~ 8월) 평균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 이하

○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
○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

※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

○ 지원기간 : 2년(2024년 10월 ~ 2026년 9월 예정)

○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[2024. 9. 1. 기준]

① 연 령 : 2024. 9. 1.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\* 청년

\* 1984. 9. 2. ~ 2005. 9. 1. 출생자

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
② 거 주 지 : 2024. 9. 1.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

③ 근무조건

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\*에 주36시간 이상\*\* 근무하고 3개월\*\*\*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

\*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제외)

\*\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)

\*\*\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'24. 6. 1. 이전(6월 1일 포함)인 경우 해당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 ('24년 6월, 7월, 8월) 평균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 이하인 자

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
<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>

▶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, 공공기관, 공기업 등 근로자

▶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
▶ 아래 ① ~ ③ 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(23. 9. 1. ~24. 8. 31.)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

※ 단, 2024.09.01.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
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

·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/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/ 청년내일저축계좌

· 취업성공수당(국민취업지원제도 I, II 유형) / 청년내일채움공제('22년 참여자까지) 등

② 청년 노동자 통장(경기복지재단)
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청년복지포인트)

▶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
▶ 휴직자(육아휴직, 6-8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) /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
※ 유의사항 :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,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### III

## 신청 방법

### <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▶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- ▶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 불가)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▶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- ▶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신청 매뉴얼 참조(홈페이지 → 자료실)

○ 신청기간 : 2024. 9. 5.(목) 09:00 ~ 9. 11.(수) 18:00

○ 신청방법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(참여접수 →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

※ 온라인 접수 문의 : ☎1577-0014(평일 09시 ~ 18시)

※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(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)

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
- 제출서류는 '24. 9. 1.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-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**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**

※ 단,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,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,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 (1577-0014)로 문의

### **[기본제출서류 5종] -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**

- ① 신청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(별도서식 -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(근무처)
-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3개월: '24년 6월 7월 8월
- ⑥ [추가 증빙 필요시]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
※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

## 【기본제출서류 8종】 - 공공 마이데이터 **미동의** 신청자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별도서식 -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⑤ **주민등록초본**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  
※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, 주소변동,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, **초본 제출 필수**
-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3개월분\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3개월: '24년 6월 7월 8월
-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3개월: '24년 6월 7월 8월
- ⑨ [추가 증빙 필요시]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
## IV 선정 기준

- (필수요건)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
  -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)
  -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    - ※ 거주지 충족 여부, 3개월 이상 재직, 중소기업 근무 여부,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
- (선정기준) 3개월('24년 6월, 7월, 8월)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- (동점자 처리)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→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

## V 지원 대상자 선정

- 선정자 발표 : 2024. 10. 15.(화) 예정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에 게재
  - 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
  -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.
  -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, 마감일인 9. 11.(수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(최종제출)하여 완료해야 합니다.
  -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은 온라인 신청·접수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 시점에서 별도의 고지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.
-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·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보완 제출 기한은 3일 내외(근무일 기준)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.
- ※ 다만,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**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(임시저장 등)**의 경우 **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**,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,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.
- ※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**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'1577-0014'**이며,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,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(약정서 제출 및 지역화폐 정보입력 등)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‘선정전 자격상실’로 처리되며,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, 사업장 규모, 근무시간 등 자격 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.
-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 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- 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및 경기도 「청년 노동자 통장」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참여(선정 및 등록)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(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,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
  - ※ 타 유사 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: ☎ 1577-0014 (평일 09시 ~ 18시)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: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 FAQ 참조